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
산업통상부 소관 5개 법률의
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한성숙 (산업통상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법 체계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5개 법률의 일부개정
에 관한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합
성천연가스제조사업에 관한 주식 또는 지분의 산정 기준에 관한 내용을
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광업법」 등 5개 법률을 개
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법률별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0. 0. ~ 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「광업법」의 개정)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장에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2조의2(광업사무소 등의 신고) ①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제42조나 제61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광구 소재지 또는 그 부근에 광업사무소를 정하고,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광업사무소의 명칭을 광산명으로 본다.
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나 명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소재지나 명칭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.

제2조(「도시가스사업법」의 개정)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의4 중 “주식”을 “의결권 있는 주식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 전단 및 후단 중 “주식”을 각각 “의결권 있는 주식”으로 한다.

제8조의4제3호 중 “주식”을 “의결권 있는 주식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의 개정)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요건·절차 및 지원내용”을 “요건·절차, 지원내용 및 사후 관리”로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(「산업발전법」의 개정)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그 활동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「화학무기·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·생물작용제 등의 제조·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화학무기·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·생물작용제 등의 제조·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인간이나 동식물의 질병에 대한 진단·치료·검사를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등을 분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
1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한 자

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 자

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3조의2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
1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4조에 따라 분리신고를 한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존·관리하는 자

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6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보유현황에 대한 기록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한 자

3. 「식물방역법」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한 병해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건을 붙인 수입 후의 관리방법에 따라 관리하는 자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질병관리청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하거나

보유현황에 대한 기록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
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82조의2(광업사무소 등의 신고)</u> <u>①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제42조나 제61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광구 소재지 또는 그 부근에 광업사무소를 정하고,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광업사무소의 명칭을 광산명으로 본다.</u> <u>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나 명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소재지나 명칭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.</u>
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4의3. (생략) 4의4. “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”이란 합성천연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, 가스도매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, 해당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<u>주식</u>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로서 해당 합성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자기가 소비하려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. 5. ~ 10. (생략) 제8조의2(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자가소비 대상물량)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해당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<u>주식</u>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가 합성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려는 경우 그 대상물량에 관하여는 제10조의9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자가소비용직수입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4의3. (현행과 같음) 4의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의결권 있는 주식</u> 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5. ~ 10. (현행과 같음) 제8조의2(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자가소비 대상물량) ---- ----- ----- <u>의결권 있는 주식</u> ---- ----- ----- ----- --. -----

자”는 “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자 또는 해당 합성천연가스제조 사업자의 <u>주식</u> 또는 지분의 과 반수를 소유한 자”로, “천연가 스”는 “합성천연가스”로, “수입” 은 “자가소비”로 본다. 제8조의4(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 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) 액화 천연가스냉열이용자는 냉열이 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 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에게만 처분할 수 있다. 1. 2. (생 략) 3.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<u>주식</u>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로서 냉열이용과정 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공 급받아 자기가 소비하려는 자	----- ----- ----- <u>의결권 있는 주식</u> ---- ----- ----- -----. 제8조의4(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 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)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<u>의결권 있는 주식</u> ----- ----- ----- -----
---	--

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
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조(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) ① ~ ③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3조(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<u>요건·절차 및 지원내용</u>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④ 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<u>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	⑤ ----- ----- <u>요건·절차, 지원내용 및 사후 관리</u> ----- -----.

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(민간 전문가의 활용) ①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37조(민간 전문가의 활용) ①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</u> <u>자는 그 활동을 마친 후 3개월</u> <u>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산업</u> <u>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</u> <u>다.</u>

화학무기·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·생물작용제
등의 제조·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2(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5조의2(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인간이나 동식물의 질병에 대한 진단·치료·검사를 목적 으로 생물작용제등을 분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</u> 1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4 조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를 국립가축방 역기관장에게 신고한 자 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 자 <u>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국립가축 방역기관장은 제2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수 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 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

② · ③ (생 략)

제13조의2(생물작용제등의 보유
량 등의 신고) ① (생 략)
<신 설>

<신 설>

④ · ⑤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
같음)

제13조의2(생물작용제등의 보유
량 등의 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
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
고를 한 것으로 본다.

1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4
조에 따라 분리신고를 한 가축
전염병 병원체를 국립가축방
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
바에 따라 보존·관리하는 자

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
관한 법률」 제21조제6항에
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보유현
황에 대한 기록을 질병관리청
장에게 제출한 자

3. 「식물방역법」 제10조제2항
및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
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
한 병해충을 농림축산식품부
장관이 조건을 붙인 수입 후의
관리방법에 따라 관리하는 자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질병
관리청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

② (생 략)	<u>관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하거나 보유현황에 대한 기록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 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
-------------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업통상부 법무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3 - 5544